

## 綜合討論要旨

崔松和(사회자) :이제는 오전·오후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할까 합니다. 오전·오후에 발표하신 발표자께서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반대·해명 또는 찬동의 의견을 해 주시고, 아까 발표시간에 시간관계상 발표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분들께서 더 기회를 가지신 후, 자유스러운 토론을 지속할까 합니다.

朴欽炳(경회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자들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사뭇 다르다고 해서 저와 근본 취지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具宗晝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법은 좀 비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뜻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진전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 등의 장애를 받아왔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때문에 아마 이러한 법들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도 토론과정에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신 것을 보아서 충분히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또한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관점이 다르니까 약간의 자율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강한 표현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는 없고 결국 마무리짓고 구체화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權寧高 교수님께서 서명자에 대한 저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북측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측에서는 특히 남측의 대표단을 정부당국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두드러지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서명자에 있어서는 남측의 총리로 고집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합의서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부속합의서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주체간의 협정이 적어도 양 당사자간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이것을 기초로 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기본합의서에 있어서는 그것이 특히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선언의 내용이 많고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남북관계법령을 정비하는데 기초로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는 아주 상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남북교류의 상위법같은 양당사자간의 합의로 보아 그 법적인 성격을 인

정하여 우리 국내법의 터전으로 보아도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국가간의 조약'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잠정적인 합의'로 본다면 결국 이것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국내법을 정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속합의서는 우리 헌법상의 조약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마치 부속합의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비취진 것 같습니다.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者** : 법제처에서 오신 曹正燦 법제관계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曹正燦(법제처 법제관)** : 대체로 논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인지의 여부와 그리고 조약이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약이 아닌 것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국회의 동의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아일보논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체제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국회에서 남북합의서같은 중요한 것이 거론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직후에 정부에서 국회에 나가서 보고를 하고 정책토론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조약의 비준·동의권이고, 그 밖에 정책질의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법률안심사라든지 예산안심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통제할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국회동의문제가 잠시 거론되었다가 이내 들어가고 지지결의를 하자고 했는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지지결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에 관하여서는 헌법이나 최소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헌법정신을 자의적·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의미로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반드시 조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서가 조약이 아니고 조약에 準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헌법상의 권력분립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통제는 동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남북합의서의 조약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對北관계에 있어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5조를 보면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약의 발효절차에 따르지 않고 적당히 대통령의 재가로 발효시킨 셈이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를 조약인데 왜 조약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식으로 나간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공적인 주장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북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고 또한 법적 효력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라고 주장할 때 네가지 요건중 제일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조약을 체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약을 定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협약에서는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두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로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합의서의 초안과 최종합의안을 비교해보면 「남북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을 UN 헌장에 따라 해결한다」라는 문장이 남측의 처음 제의문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최종합의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북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UN헌장에 따른다는 것이 바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교과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서는 UN헌장에 따른다는 구절을 삭제하면서 오히려 序文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민족내부간에 규율되는 특수한 관계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국제법의 규율을 받을 의도가, 즉 바꾸어 말하면 국제법상 법적효과를 창출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약체결의 實益이 있어야만 쌍방이 조약체결을 의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어느 입장을 보더라도 조약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ICJ에 제소한다거나 조약위반의 효과로서 경제봉쇄를 취한다거나 이와같은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측이 위반했을 때 미국·영국 등에 대해서 경제봉쇄에 동참을 호소할 성질도 아닙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로 제3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국제법의 규율을 받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면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과가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특히, 국가보안법과의 상충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이행을 위한 보장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정치지도자간에 체결된 신사협정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감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사협정이나 조약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용어인데 이것은 민족내부의 문제인 남북합의서에 차용할 필요가 있겠는가의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하나의 새로운 특수한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辛永茂 변호사께서 발표하신 것 중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북한주민擬制條項)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노선에 따르는 단체'라는 것은 '북한정부에서 결정한 노선을 따르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친북한단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에 승인을 요하고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입국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와같은 것이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공백규정이거나 하는 말씀은 견해를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者 : 감사합니다. 申雄濤 변호사님, 아까 하시다 만 얘기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申雄濤(변호사) : 저는 여러 명의 북측의 법률가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그들이 상당히 순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나하면, 우리가 그들과 세미나 등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역시 자본주의라든지 국제거래 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동구·소련·중국이 전재해서 그들에게 법과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動的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지적소유권 문제는 중국에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지적소유권 위반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양이나 금액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우리는 자주 법도 바꾸고 행정적으로 규제해서 흐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양이 적지만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흐름은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측도 지금 굉장히 민주화·개방화·국제화되어 가며 또한 법률문제도 국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조계에 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 감사합니다. 權五乘 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權五乘 교수(서울대)** :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디만 아까 曹正燦 법제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협력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계획가운데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류는 확대하여 가능하면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지만, 협력단계 나아가 경제통합단계로 지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曹법제관은 우리측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달리 생각하여 그 교류협력이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측 기업이 우선 북측에 거점을 마련한다는 식의 접근이면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것이냐 하는 과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당경쟁보다는 협력이 궁극적으로 통일 내지 경제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거냐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목이 저희들에게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예가 많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통일된 뒤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모델을 상정해서 경제협력을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규제에 동의하지만 규제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단순한 과당경쟁을 넘어서서 그 협력이 통일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유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규제는 시장경쟁원리의 인정을 전제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유도하고 조정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司會者** : 네, 감사합니다. 金東熙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金東熙(서울대)** : 조약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예상외로 국제조약에 관한 내용적 검토없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약일 수도 있고 조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成樂實(영남대)** :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의 문제에 관해서 경제질서 내지는 경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세계사의 흐름이 자유주의의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래 자유주의의 극단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쪽으로 가고 있고, 계획경제질서의 극단에서는 동구의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상당히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左派的인 모델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두 모델이 합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요구되며 또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체제를 보다 강화시키면서 자연히 국가적 규제·조정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을 가급적 빨리 끌어내기 위하여 즉 시장경제질서의 도입

을 안되더라도 그 중간 모델정도까지는 끌어내기 위하여 현재의 중국의 모델에 준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차이의 문제는 바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계사적 흐름에 있어서 우리측이 더 유리한 체제를 우연히도 갖고 있기에 우리측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司會者** : 감사합니다. 張明奉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張明奉(국민대)** : 첫째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통일헌법의 제정방향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 통일헌법의 최고가치 내지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당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체제가 많은 변화를 해야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유도장치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려 한다면, 통일헌법을 개방성을 띤 헌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미리 이념과 체제를 고정시켜 놓고 이 틀에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좁은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통일헌법마련의 방법으로서는 예멘의 경우를 모범으로 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예멘은 1981년에 남북 예멘간의 교류·협력·조정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협력·조정을 했고 통일헌법초안을 마련하여 이 초안으로 결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합의통일의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통일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0년 5월 22일 예멘통일을 선포했고 그로부터 30개월동안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과도기조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과도기가 끝나서 통일이 완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째로,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조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남북합의서를 신사협정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사협정으로 본다고 할 때,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다음 정권의 지도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과거의 7·4성명처럼 되지 않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신사협정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법논리·법형식을 떠난 국민의 정서라고 봅니다. 우리가 형식논리에 구애되어서 법적 성격을 신사협정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司會者** : 감사합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 연세대 金性洙 교수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金性洙(연세대)** : 헌법 제 3조와 제 4 조와의 관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였는데 또한 많은 점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3조가 있었고 제146조의 통일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통일방식을 예정하고 있을까요? 제 3조라고 봅니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주도의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 3조의 조항만을 두었고 제 3조를 제 4 조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독일헌법만을 염두에 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임박했을 경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통일절차문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蔡東旭(법무부 검사)** : 남북관계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답했던 심정을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지 않으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를 뒷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민·형사사건의 해결방안, 북한의 투자관계법령의 분석, 저작권·공업소유권보호문제 등이며, 中長期的으로는 남북간의 법률통합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권 반환문제, 정치적피해자 보상문제, 사법조직개편문제 등의 각 영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胡文赫(서울대)** : 방금 채점사님의 말씀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독일 Bonn의 통일 담당자가 말하기를 “한국사람들이 벌써 수십 차례나 통일관련자료를 요구하는데 당신들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거냐”라고 하더라고요. 이같은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상호간의 자료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 학계의 연구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曹正燦(법제처 법제관)** : 張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남북합의서가 신사협정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헬싱키협정은 실은 신사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동서간의 구축협상이 진전을 보였습니다. 남북합의서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7·4공동성명이 정권담당자가 바뀌면 효력이 중단되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명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司會者**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의 논의는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오늘의 자리에서는 바야흐로 법의 영역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조그마한 기여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법학자에게는 自己課題의 확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생각의 실마리가 통일과정에서의 법의 역할을 다뤘기에 오늘의 논의는 그 어떤 것 보다도 진지하고 또한 아주 실제적이었다고 자

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란 장래의 모습을 豫見하는 기능을 가지기에 또한 이 논의는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통일에 대해 법을 통한 기여를 담당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장시간에 걸친 모든 발표·토론자, 그리고 여러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학연구소 權寧星 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權寧星(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보신 崔松和 교수님은 한국계일의 사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 세미나를 지원하신 統一院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논의한 이 주제는 하나의 始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